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16. 문정복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 2025. 9.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 상정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문정복의원)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한편,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2026년도 교육세 세제 개편안과 연계하여 국세 교육세를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신규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의 60%는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영유아특별회계는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과 일반회

계로 추진하는 보육사업으로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신설하는 국정과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세로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25. 12. 1. 본회의 자동부의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음.

[붙임1]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2]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27.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7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시·도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보조금 집행 주체도 시·도지사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 지사는”을 “시·도지사 등은”으로, “경비중”을 “경비 중”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생 략)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u>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 지사는</u>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u>시·도 지사</u> 등은----- ----- ----- -----.
④ (생 략)	④ (원안과 같음)
⑤ <u>시·도 지사는</u> 제2항에 따른 <u>경비중</u>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u>시·도지사</u> 등은----- ---- <u>경비 중</u> ----- -----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

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를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 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
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